#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192

발의연월일: 2022. 6. 28.

발 의 자:전용기・이병훈・김병기

김영배 · 송갑석 · 김병주

주철현 · 강훈식 · 이성만

신정훈 · 정성호 · 이원욱

유기홍 · 홍정민 · 윤재갑

최혜영 · 홍성국 · 유정주

한병도 • 박 정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대비 부동산(토지+건물) 비중은 74.8%에 달할 정도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원금이 5천만원"을 "저축원금이 1억원"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한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1명당 <u>저축원금이 5천만원</u>	<u>저축원금이 1억원</u>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	
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	
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	
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u>2022</u>	<u>2024년</u>
<u>년</u>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	
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